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5. 28.

다. 상정일자: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6.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명시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2024. 12. 31.)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조)
-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규정 개정(안 제2조의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등
- 입법예고 : 2024. 4. 18. ~ 5. 8.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 명시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2024. 12. 31.)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의 개정: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제159조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제2조의2의 개정: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영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이는 기금의 장기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도로 관리 및 복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문구의 명확성을 위해 "조례"를 "이 조례"로 수정함.

제8조의 개정: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 또한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성별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조문 개정에 따른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2024. 12. 31.)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구성 방안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금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원회의 구성 인원 증가 및 성별 균형 고려 등의 규정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위원 선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